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경비업법」 중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 등록 결격조항은 삭제하되 나머지 14개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수정주요내용

가. 일부 법률을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제명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변경함.

나.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재해구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은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삭제).

다. 「경비업법」중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 옥외광고사업 등록 결격조항은 삭제함(안 제1조 및 제11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16개”를 “2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u>16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 한 법률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 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u>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u> 제2조(「경찰공무원법」의 개정)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u> <u>제27조 단서 중 “제8조제2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 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 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u> 을 “제8조제2항제6호는”으로 한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u>2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 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u>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u>제3조(「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u>제4조(「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3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69조제1호 단서 중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 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 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을 “제33조제5호는”으로 한다.</u>	<u><삭 제></u>
<u>제5조(「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제6조(「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삭 제>
제7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제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삭 제>
제9조(「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제10조(「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u>제40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2조(「재해구호법」의 개정)</u> <u>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u> <u>이 개정한다.</u>	<u><삭 제></u>
<u>제17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u> <u>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u> <u>특별법」의 개정) 제주특별자</u> <u>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u> <u>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u> <u>과 같이 개정한다.</u>	<u><삭 제></u>
<u>제176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4조(「지방공무원법」의 개정)</u> <u>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u> <u>같이 개정한다.</u>	<u><삭 제></u>
<u>제31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61조제1호 단서 중 “제31조</u> <u>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u> <u>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u> <u>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u> <u>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u> <u>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u> <u>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u> <u>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을</u> <u>“제31조제5호는”으로 한다.</u>	
<u>제15조(「충포·도검·화약류 등</u>	<u><삭 제></u>

<u>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u> <u>제55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6조(「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7
----------	------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박정현 · 박홍근 · 서영교
이기현 · 염태영 · 오세희
김문수 · 김남근 · 박 정
이용선 · 김남희 · 박주민
이원택 · 황정아 · 김용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생략)	제11조의2(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현행과 같음)